



목 포 시

# 시 보



시보는 공문서의  
효력을 갖는다.

제1465호 2020. 11. 9.(월)

## 고 시

○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----- 2

## 규 칙

○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----- 3

|    |  |  |  |  |  |  |  |
|----|--|--|--|--|--|--|--|
| 회람 |  |  |  |  |  |  |  |
|----|--|--|--|--|--|--|--|

발행 : 목포시 편집 : 공보과 ☎ 061-270-8539

목포시 고시 제 2020-298호

##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

건물 등이 멸실되어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.

2020년 11월 9일

## 목 포 시 장

### ○ 폐지하는 도로명주소

| 순번 | 폐지하는 도로명주소 | 폐지일          | 폐지 사유 |
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
| 1  | 양을로99번길 19 | 2020. 11. 9. | 건물멸실  |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민원봉사실(☎061-270-8313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○ 참고사항

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,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.

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 
이에 공포한다.

2020년 11월 9일

## 목 포 시 장 김 종 식

목포시 규칙 제 1806 호

###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 전단 중 “근로 계약”을 “표준근로계약”으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단원”을 “단원은 호봉제가 적용되는 단원”으로, “적용기준”을 “신규 단원은 연봉제로 하며 적용기준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.

제12조제1항 단서 중 “축구단원”을 “연봉제가 적용되는 단원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선수 단원의 등급은 축구단원”을 “선수단원의 등급”으로, “하고 그 밖에 종목은 A급, B급, C급으로 한다”를 “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축구”를 “연봉제가 적용되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종목별 · 개인별”을 “개인별”로 한다.

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5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【별표2】

##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표(제7조 관련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등급            | 순위          | 총점<br>(100%) | 훈련평가(35%)  |            | 경기성적 및<br>팀공헌도 (30%) |     | 경력 (25%)  |          |           | 감독<br>평가<br>(10%)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훈 령<br>성실도 | 전 술<br>이해도 | 경 기<br>출전율           | 공헌도 | 7 년<br>이상 | 3~6<br>년 | 2 년<br>이하 |                   |    |
| 점수배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| -           | 100점         | 20         | 15         | 20                   | 10  | 25        | 20       | 15        | 10                | -  |
| 개<br>인<br>기<br>록<br>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○○           | A           | 1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○○           | A           | 2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○○           | B           | 3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○○           | B           | 4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○○           | C           | 5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○○           | C           | 6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○○○<br>、<br>、 | C<br>、<br>、 | 7<br>8<br>9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
| ※ 항목별 점수배정<br>○ 경기출전율 : 76%이상(20점), 51~75%(15점), 26~50%(10점), 25%이하(5점)<br>○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, 국가대표 및 프로1군 출신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 점수를 가산한다.<br>○ 등급배분은 예산사항 및 선수단 현황에 따라 배분한다.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|

## 【별표3】

##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급여 산정표(제9조 관련)

| 구 분            | 연 봉 액 기 준 표 (천 원)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감 독            | 45,000 ~ 80,000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코 치            | 36,000 ~ 55,000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트레이너<br>(의무포함) | 25,000 ~ 45,000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구 분            | 연 봉 액 기 준 표 (천 원)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| A급                | B급                | C급                | D급                | E급     |
| 선 수            | 55,000<br>~47,000 | 46,000<br>~38,000 | 37,000<br>~29,000 | 28,000<br>~23,000 | 21,900 |

※ 호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의 경우 지도자의 최고 호봉은 25호봉, 선수의 최고 호봉은 15호봉으로 한다.

## 【별표5】

## 포상금 및 승리수당 지급기준(제12조 및 제21조 관련)

## □ 축구팀 포상금 지급기준

(단위 : 원)

| 구분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포 상 금     |         | 각종대회<br>승리수당 | K3리그 승리수당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|
|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우 승       | 준우승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|
| 감독 | 감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000,000 | 900,000 | 1,000,000    |           |
| 코치 | 코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00,000   | 700,000 | 800,000      |           |
| 선수 | 엔트리 중 (평균)<br>70분 이상 출전            | 800,000   | 700,000 | 900,000      |           |
|    | 엔트리 중 (평균)<br>70분 미만~40분 초과 출<br>전 | 700,000   | 600,000 | 700,000      |           |
|    | 엔트리 중 (평균)<br>40분 이하~10분 초과 출<br>전 | 500,000   | 400,000 | 400,000      |           |
|    | 엔트리 중 (평균)<br>10분 이하 출전            | 300,000   | 200,000 | 200,000      |           |
|    | 엔트리 중 미출전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,000   | 100,000 | 100,000      |           |

## □ 하키·육상팀 포상금 지급기준

(단위 : 원)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금                  | 은                  | 동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올림픽경기 및 세계선수권 또는<br>아시안게임과 세계규모대회<br>(20개국 이상 참가시 입상경우) | 예산의 범위에서<br>격려금 지급 | 예산의 범위에서<br>격려금 지급 | 예산의 범위에서<br>격려금 지급 |
| 전국체육대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000,000          | 700,000            | 500,000            |
| 전국규모대회 및 일반국제대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- 해당종목 4팀/명이하 참가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0,000            | 200,000            | 100,000            |
| - 해당종목 5팀/명이상 참가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0,000            | 300,000            | 200,000            |
| ※ 개인종목의 지도자는 해당 종목 선수 중 가장 상위메달을 기준 적용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
[별지 제2호 서식]

**표 준 근 로 계 약 서** (제5조 제1항 관련)

목포시장(이하 “사업주” 이라 한다)과 근로자 ○○○○(이하 “근로자” 이라 한다)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## □ 근로자의 인적사항

| 성 명 | 성 별 | 연 령 | 생년월일  | 연 락 처(핸드폰) |      |
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|
|     |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|      |
| 주 소 |     |     | 최초계약일 | 근무부서       | 근무형태 |
|     |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|      |

**1.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**

- 근무부서(장소) :
- 담당업무 내용 : ○○○○(담당업무명) 그 밖에 시장이 부여한 업무
- ※ 근무부서 및 담당하는 업무는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**2. 계약기간**

-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- ② “사업주” 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  1. “근로자” 가 수행업무 등 제반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
  2. “근로자” 가 신체 또는 정신적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. 단, 「근로기준법」 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 3. 사업의 종료 및 업무의 조정(민간위탁 및 외주용역포함) 등 관련예산(국·도비포함)의 폐지, 감원에 의하여 “근로자” 에 대한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때
  4. 사용부서에서 계약기간동안 업무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  5. 신원·경력·학력 등을 조회한 결과 서류 전형시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  6. 형사상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선고, 금치산·한정치산 선고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(국가공무원법) 제33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규정위반시)

**3. 보 수**

- ① (임금) 보수는 시간(일, 주, 월)급 :            원, 그 밖의 법정수당(연장근로수당, 야간근로수당, 휴일근로수당 등)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며,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.
- ② (지급시기) “사업주” 는 “근로자” 에게 목포시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보수를 지급한다.(단,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.)  
 임금 지급은 “근로자” 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.(계좌번호 : \_\_\_\_\_)

- ③ (정산) 보수지급 후 “근로자”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“사업주”는 “근로자”가 기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“근로자”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“근로자”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.
- ④ (감액지급) “근로자”가 “사업주”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, 부상으로 인한 병가일수가 유급병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. 단,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⑤ (기타)지침,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.
- ⑥ 위 항과 달리하여 임금종류나 지급방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.

#### 4. 근로시간 및 휴게

- 근로시간 :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
- 휴게시간 :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
- ※ 합의에 의한 경우 별도 정한 시간으로 함
- “사업주”는 필요한 경우에는 “근로자”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#### 5. 근로일 및 휴일

- 근로일 :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.
- 휴 일 :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 및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 한다.
- 휴 가 : 연차유급휴가는 「근로기준법」을, 특별휴가는 「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」를 준용한다.

#### 6. 기타

-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,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근로기준법」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7. 계약서의 보관

“사업주”와 “근로자”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

(사업주) 목포시장 :  
(근로자) 성    명 :

서명(인)  
서명(인)

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5조(서약) ① 시장과 단원은 단원의 입단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<u>근로 계약</u> 을 체결한다. 다만 축구단원은 소속 연맹에서 규정한 별도의 통일 서식에 따라서 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| 제5조(서약) ① -----<br>-----<br><u>표준근로계약</u> 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9조(단원의 봉급) ①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9조(단원의 봉급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그 밖의 <u>단원</u> 은 「지방공무원 보수 규정」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며 <u>적용기준</u> 은 별표 3과 같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----- <u>단원</u> 은 <u>호봉제가 적용되는 단원</u> -----<br>----- <u>신규 단원</u> 은 <u>연봉제로 하며 적용기준</u> -----. |
| 제10조(호봉획정) ①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0조(호봉획정) ①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호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의 초임 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하되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. · 2.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. · 2.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. <u>별표 3의 선수 등급에 따른 초임 호봉적용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삭 제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2조(수당의 지급)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제12조(수당의 지급) ① -----<br>-----<br>-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만, 축구단원은 승리수당에 한하여 지급한다.

② (생 략)

제7조(단원의 등급 조정) ① 선수 단원의 등급은 축구단원은 A급, B급, C급, D급, E급으로 하고 그 밖  
에 종목은 A급, B급, C급으로 한  
다.

② 축구 선수단원은 매년 12월 또는 신규 임용시 해당 연도 1년간의 경기실적 및 팀 기여도와 선수 경력 및 지도자의 훈련평정표에 따라 등급을 조정한다.

③ 그 밖의 종목의 단원은 신규 임용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등급을 조정한다.

④ 종목별·개인별 등급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연봉제가 적용되는 단원-----  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7조(단원의 등급 조정) ① 선수단원의 등급-----  
----- 한다.

② 연봉제가 적용되는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<삭 제>

③ 개인별 -----  
-----.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【별표2】 <u>종목별</u>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표(제7조 관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【별표2】 개인별 등급산정 기준표(제7조 관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(축 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삭 제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(생 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<p>※ 항목별 점수배정<br/>(생 략)<br/>○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, <u>U-17,U-19,U-20</u> 국가대표 및 프로1군 출신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 점수를 가산한다.<br/>(생 략)</p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※ 항목별 점수배정<br/>(현행과 같음)<br/>○ 경력은 고등학교 졸업이후 선수경력을 의미하며, 국가대표 및 프로1군 출신 선수에 대하여는 10점의 경력 점수를 가산한다.<br/>(현행과 같음)</p> |  |
| (기타종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삭 제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등 급 기 준 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A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대학졸업 선수 중 최초 임용시</p> <p>1. 최근 1년 이내 국가대표(상비군 제외) 경력 선수</p> <p>2. 전국체육대회(성인일반분야/개인종목에 한함) 및 국제대회(올림픽, 아시안게임, 유니버시아드, 세계선수권대회)에서 3위 이내 입상자</p>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B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p>1. 대학졸업선수로서 장래가 유망되는 선수</p> <p>※ 4년제 대학교에서 해당 종목 선수로 활동한 자</p> <p>2. 고교졸업 선수 중 A등급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자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C등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A·B등급에 해당되지 않으나 장래가 유망되는 선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※ 등급은 예산사항 및 선수단 현황에 따라 하향 조정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【별표3】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급여 산정표(제9조 관련)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【별표3】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급여 산정표(제9조 관련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(축 구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<삭 제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연봉액 기준표 (천원)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연봉액 기준표 (천원)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감 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45,000 ~ 80,000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감 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45,000 ~ 80,000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코 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36,000 ~ 55,000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코 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36,000 ~ 55,000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트레이너<br>(의무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25,000 ~ 45,000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트레이너<br>(의무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25,000 ~ 45,000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연봉액 기준표 (천원)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연봉액 기준표 (천원)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A급                      | B급                      | C급                      | D급                | E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A급                      | B급                      | C급                      | D급                | E급     |
| 선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55,000<br>~47,000       | 46,000<br>~38,000       | 37,000<br>~29,000       | 28,000<br>~22,000 | 21,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선 수 |                 | 55,000<br>~47,000       | 46,000<br>~38,000       | 37,000<br>~29,000       | 28,000<br>~23,000 | 21,900 |
| (기타종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<삭 제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초임호봉 산정기준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초임호봉 산정기준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지<br>도<br>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 독      | 일반직 5급 공무원 1호봉 기준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코 치      | 일반직 6급 공무원 1호봉 기준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의무<br>코치 | 일반직 7급 공무원 1호봉 기준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초임호봉 산정기준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초임호봉 산정기준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A급                      | B급                      | C급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선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일반직 7급<br>공무원<br>5호봉 기준 | 일반직 7급<br>공무원<br>4호봉 기준 | 일반직 7급<br>공무원<br>2호봉 기준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선 수 |                 | 일반직 7급<br>공무원<br>5호봉 기준 | 일반직 7급<br>공무원<br>4호봉 기준 | 일반직 7급<br>공무원<br>2호봉 기준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※ 지도자의 최고 호봉은 25호봉, 선수의 최고 호봉은 15호봉으로 한다.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※ 호봉제가 적용되는 단원의 경우 지도자의 최고 호봉은 25호봉, 선수의 최고 호봉은 15호봉으로 한다. |     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
| 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【별표5】 포상금 및 승리수당 지급기준 제2조 및 제1조 관련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【별표5】 포상금 및 승리수당 지급기준 제2조 및 제1조 관련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□ 축구팀 포상금 및 승리수당 지급기준<br>(단위 : 원)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□ 축구팀 포상금 및 승리수당 지급기준<br>(단위 : 원)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포상금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각종대회<br>승리수당 | 내셔널<br>리그<br>승리수당 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포상금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각종대회<br>승리수당 | K3리그<br>승리수당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우승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준우승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우승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준우승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감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독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000,000 | 900,000      | 1,000,000         | 감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감독                          | 1,000,000 | 900,000      | 1,000,000    |
| 코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코치                          | 800,000   | 700,000      | 800,000           | 코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코치                          | 800,000   | 700,000      | 800,000      |
| 선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엔트리 중 (평균) 70분 이상 출전        | 800,000   | 700,000      | 900,000           | 선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엔트리 중 (평균) 70분 이상 출전        | 800,000   | 700,000      | 900,000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엔트리 중 (평균) 70분 미만~40분 초과 출전 | 700,000   | 600,000      | 700,000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엔트리 중 (평균) 70분 미만~40분 초과 출전 | 700,000   | 600,000      | 700,000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엔트리 중 (평균) 40분 이하~10분 초과 출전 | 500,000   | 400,000      | 400,000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엔트리 중 (평균) 40분 이하~10분 초과 출전 | 500,000   | 400,000      | 400,000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엔트리 중 (평균) 10분 이하 출전        | 300,000   | 200,000      | 200,000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엔트리 중 (평균) 10분 이하 출전        | 300,000   | 200,000      | 200,000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엔트리 중 미출전                   | 100,000   | 100,000      | 100,000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엔트리 중 미출전                   | 100,000   | 100,000      | 100,000      |
| (생략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(현행과 같음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
## 현 행

## [별지 제2호 서식] 직장운동경기부 근로계약서(제5조 제1항 관련)

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및 선수 임용에 있어 사용자인 목포시장과 피고용자인 ○ ○ ○는 「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## 1. 계약당사자

가. 사 용 자 : 목포시장

나. 피고용자

(1) 성 명 :

(2) 생년월일 :

(3) 주 소 :

## 2. 근로조건

가. 근로직종 : 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종목)

나. 단원의 직책 :

다. 보 수 : 「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 
※ 연봉에는 연·월차수당, 주휴수당, 시간외근무수당이 포함되며 기타 제수당 및 포상금은 「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」에 따라 별도 지급.

라. 복무 및 훈련 : 「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적용

## 3. 근로계약의 기간 :     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~      년      월      일 (○년간)

## 4. 기타조건

가. 피고용자인 선수 및 지도자는 붙임의 서약서에 서명날인 후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 후 또는 계약기간 중에 고용 중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나. 계약 이전에 발생한 신체상의 손상이 계약기간 중에 재발하여, 훈련 및 경기에 6개월 이상 참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근로계약 기간 중에 고용 중지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
다. 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적용한다.

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간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 (필요시 별도 계약서 추가 첨부)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사 용 자 : 목 포 시 장 (인)

근 로 자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인)

## 개 정 안

## [별지 제2호 서식] 표준근로계약서(제5조 제1항 관련)

목포시장(이하 “사업주”이라 한다)과 근로자 ○○○(이하 “근로자”이라 한다)는 아래 근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## □ 근로자의 인적사항

| 성 명 | 성 별 | 연 령 | 생년월일  | 연 락 처(핸드폰) |      |
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|
|     |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|      |
| 주 소 |     |     | 최초계약일 | 근무부서       | 근무형태 |
|     |     |     |       |            |      |

## 1.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

- 근무부서(장소) :
- 담당업무 내용 : ○○○○(담당업무명) 그 밖에 시장이 부여한 업무  
※ 근무부서 및 담당하는 업무는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## 2. 계약기간

- ①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.
- ② “사업주”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“근로자”가 수행업무 등 제반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
2. “근로자”가 신체 또는 정신적장애가 발생하여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. 단, 「근로기준법」 제23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3. 사업의 종료 및 업무의 조정(민간위탁 및 외주용역포함) 등 관련예산(국·도비포함)의 폐지, 감원에 의하여 “근로자”에 대한 근로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때
4. 사용부서에서 계약기간동안 업무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5. 신원·경력·학력 등을 조회한 결과 서류 전형시 허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
6. 형사상범죄로 금고이상의 형의선고, 금치산·한정치산 선고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(국가공무원법) 제33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규정위반시)

## 3. 보 수

- ① (임금) 보수는 시간(일,주,월)급 :            원, 그 밖의 법정수당(연장근로수당, 야간근로수당, 휴일근로수당 등) 등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며, 그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.
- ② (지급시기) “사업주”는 “근로자”에게 목포시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보수를 지급한다.(단,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.)  
임금 지급은 “근로자”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.(계좌번호 : \_\_\_\_\_)
- ③ (정산) 보수지급 후 “근로자”의 퇴직 등 보수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“사업주”

는 “근로자”가 기지급 받은 급여 중 근무하지 않은 날에 해당하는 급여를 “근로자”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등 금품에서 정산하고 지급하며 정산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“근로자”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.

- ④ (감액지급) “근로자”가 “사업주”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 또는 질병, 부상으로 인한 병가일수가 유급병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로 한다. 단, 업무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- ⑤ (기타)지참, 조퇴 또는 외출은 누계 8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.
- ⑥ 위 항과 달리하여 임금종류나 지급방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.

#### 4. 근로시간 및 휴게

- 근로시간 :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
- 휴게시간 :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
- ※ 합의에 의한 경우 별도 정한 시간으로 함
- “사업주”는 필요한 경우에는 “근로자”와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#### 5. 근로일 및 휴일

- 근로일 :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한다.
- 휴 일 :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 및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 한다.
- 휴 가 : 연차유급휴가는 「근로기준법」을, 특별휴가는 「목포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」를 준용한다.

#### 6. 기타

-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목포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,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근로기준법」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7. 계약서의 보관

“사업주”와 “근로자”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20    년    월    일

(사업주) 목포시장 :  
(근로자) 성    명 :

서명(인)  
서명(인)